

의안번호	2205721
의 퇴 인	정성국 의원
회 답 일	2024.12.02.
추 계 번호	24C522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6~2030년)동안 총 3,143억 5,200만원(연평균 628.7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변경 (안 제27조)	1,302.8	409.5	441.8	475.3	514.1	3,143.5	628.7

주: 1) 최근 5년간 초등·고등 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수 증가율을 토대로 추정된 인원수에 '24년 기준 과정별 특수학교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대상자수 비율을 적용
2) 최근 3년간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가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년 기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학급수'와 '추계기간동안의 특수교육대상자수로 추정된 인원'에 개정안에 따른 학급설치 비율을 적용하여 도출된 필요 학급수'의 차이를 증개축이 필요한 학급수로 보았음
3) 2027년 이후에는 연도별 필요 학급수에서 전년도에 설치된 학급수를 뺀 나머지 수만큼 증개축되는 것으로 가정
4) 학급 증개축 비용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1항)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유치원·중학교 과정: 현행 유지 초등학교 과정: (현행) 6인 → (개정안) 4인 고등학교 과정: (현행) 7인 → (개정안) 6인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학급 설치 기준을 개정하여 학급 수를 확대하는 경우 학급 신·증설비가 추가로 발생
 - 학급 수 확대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증원 가능 여부¹⁾ 및 기존 교원 활용가능성 등이 불분명하므로 교원 인건비는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학급 확대는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학급 확대에 따른 특수학교 추가 설립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국·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국가로부터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24년의 초등·고등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구분하여 산출²⁾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122)에 따르면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전체 해당 연령대의 인구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수 비율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수 증가율을 사용함

- (추가 설치 학급 수) 개정안에 따라 설치될 기관 유형별·학교급별 학급 수에서 기 설치될 학급 수를 차감한 학급 수를 신·증설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2026년에 기 설치될 학급 수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학급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며, 2027년 이후부터는 전년도까지 설치된 학급수와 비교를 통하여 신증축 수요를 계산³⁾⁴⁾⁵⁾
- (신·증설비 단가) 교육부가 제출한 학급당 평균 신·증설비 단가 추정액 5,000만원(2022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동안 특수교육대상자수를 산출한 후 개정안에 따른 학급수와 기설치된 학급수의 차에 신·증설비 단가를 적용하여 도출
-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정) 최근 5년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추계기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아래와 같음⁶⁾

[표 2] 초등·고등과정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증가율
초등 과정	41,091	43,205	44,814	48,448	51,585	54,283	5.73%
고등 과정	20,502	20,655	20,169	19,867	20,725	22,040	1.46%

자료: 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24.8.)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2026년의 기설치 학급수가 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학급수보다 이미 많을 경우 합계에서 제외함
- 4) 통계상의 한계로 장애유형별 구분 없이 전국 단위로 계산함
- 5)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변화에 따라 일반학급에 배정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해당학급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예상이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6) 개정안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대상자수 대비 학급수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통계에 대해서만 정리함

[표 3] 2024년 초등·고등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현황

(단위: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합계
초등과정	10,316 (19.0%)	35,042 (64.6%)	8,925 (16.4%)	—	54,283 (100%)
고등과정	6,895 (31.3%)	11,185 (50.7%)	3,960 (18.0%)	—	22,040 (100%)

주: ()안 숫자는 각 과정별 전체 인원 대비 비중

자료: 2024년 특수교육통계(2024.6.)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추계기간(2026~2030년) 특수교육대상자 추정

(단위: 명)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초등	11,531	39,170	12,192	41,413	12,890	43,785	13,628	46,292	14,408	48,943
고등	7,097	11,513	7,201	11,681	7,306	11,851	7,412	12,024	7,520	12,199

주: 1)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임

2) 최근 5년간 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수 증가율을 토대로 추정된 대상자수에 '24년 기준 과정별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정된 대상자수 비율을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수 추정) 최근 3년간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2026년의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수 추정
 - 2021~2024년의 초등과정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급수 증가율은 각각 4.0%와 5.15%, 고등과정은 각각 1.58%와 1.50%임

[표 5] 연도별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급수: 2021~2024년

(단위: 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증가율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초등	1,793	6,330	1,871	6,701	1,970	7,038	2,017	7,360	4.0%	5.15%
고등	1,165	1,932	1,149	1,926	1,187	1,955	1,221	2,020	1.58%	1.50%

자료: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2026년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추정

(단위: 개)

구 분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급 수	2,182	8,138	1,260	2,081

주: 2021~2024년의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증가율이 유지됨을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추가 설치가 필요한 학급 수) [표 4]에서 도출된 특수교육 대상자 추정치에 개정안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2026년에 증개축이 필요한 학급수 도출

[표 7] 2026년에 증개축이 필요한 학급수

(단위: 개)

구분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학급수 (추정,A)	특수교육 대상자수 (추정,B)	개정안에 따른 학급수 ⁷⁾ (C1=B/4, C2=B/6)	증개축 필요 학급수 (D=A-C)	특수학급 학급수 (추정,A)	특수교육 대상자수 (추정,B)	개정안에 따른 학급수 ²⁾ (C1=B/4, C2=B/6)	증개축 필요 학급수 (D=A-C)
초등	2,182	11,531	2,883	701	8,138	39,170	9,793	1,655
고등	1,260	7,097	1,183	-	2,081	11,513	1,919	-

주: 1),2) 개정안에 따라 초등(C1)은 4명당 1개반을, 고등(C2)은 6명당 1개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해당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1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1. '2026년에 기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급수'와 '2026년의 특수교육대상자수(추정)에 개정안에 따른 학급설치 비율을 적용하여 도출한 학급수'의 차이를 증개축이 필요한 학급수로 보았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8] 연도별 증개축 필요 학급수 추정 : 초등 과정

(단위: 개)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특수학교	701	165	175	184	196
특수학급	1,655	561	593	626	663

주: 1)(2026년) '2026년에 기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급수'와 '2026년의 특수교육대상자수(추정)에 개정안에 따른 학급설치 비율을 적용하여 도출한 학급수'의 차이를 증개축이 필요한 학급수로 보았음

- 2)(2027년 이후) 연도별 필요 학급수에서 전년도에 설치된 학급수를 뺀 나머지 수만큼 증개축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고등과정의 경우 2026년에 기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학교 학급(1,260개)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2,081개)가 개정안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필요한 학급수를 초과하여 증개축 소요가 없는 것으로 추정함⁸⁾

7) 4인(초등) 또는 6인(고등)을 초과하는 경우 1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8) 2027년~2030년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 특수학교 학급수는 1,201개, 1,218개, 1,236개, 1,254개이며,

- 학급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단가(2022년 기준 5,0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기간(2026~2030년)동안 증개축이 필요한 학급수에 추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02.8억원, 2027년 409.5억원, 2028년 441.8억원 등 5년간 총 3,143억 5,200만원으로 도출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변경	1,302.8	409.5	441.8	475.3	514.1	3,143.5	628.7

주: 1)최근 5년간 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수 증가율을 토대로 추정된 인원수에 '24년 기준 과정별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대상자수 비율을 적용
 2)최근 3년간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가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년 기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학급수와 추계기간동안의 특수교육대상자수로 추정된 인원수에 개정안에 따른 학급설치 비율을 적용하여 도출한 학급수의 차이를 증개축이 필요한 학급수로 보았음
 3)2027년 이후에는 연도별 필요 학급수에서 전년도에 설치된 학급수를 뺀 나머지 수만큼 증개축되는 것으로 가정
 4)학급 증개축 비용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연도별·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수와 학급수 증가율 등을 토대로 추정한 값으로 실제 지역별·장애유형별 대상자수 및 학급수 등과 특수학교 설립 여부, 증개축 비용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같은 기간동안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1,947개, 1,976개, 2,005개, 2,034개로, 2026년에 기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각의 학급수 보다 작으므로 증개축 소요에서 제외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